

##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

제정 2023년 7월 17일 조례 제2066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먹거리 기본권”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, 성별, 물리적·사회적·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2. “지역 먹거리”란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·제조·가공된 식품을 말한다.
3. “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”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.

**제3조(기본원칙)** 오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축수산업, 환경, 복지, 교육,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이 침해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**제6조(먹거리계획 수립)** ① 시장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오산시 먹거리계

##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

획(이하 “먹거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
2.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
4.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오산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**제7조(재정지원)**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**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의 수립·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오산시 먹거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먹거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9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
가.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
나.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자

다. 먹거리 기본권 보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10조(위원의 임기)**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 제11조(위원회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먹거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- 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.
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위원의 위촉해제)**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2조에 따른 제척·기피·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4.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14조(수당)**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